

2026년 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강의계획서

일정 2026년 7월 7일, 1회

교재 민소법 최신 판례 특강
+ 변리사 법전(각자 지참)

강의시간

18:30 ~ 22:00

강사

김 춘 환

민사소송법 1타!!

최신의 민사소송법 판례를 알게 해 드립니다.

□ 강사 소개

1. 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Ph.D, 민사법 전공) 수료
前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 과정 강사(민법, 민소법)
前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인천대 법학과, 성신여대 법학과 특강 강사
現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이사
現 중앙법학회 이사
現 월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전임교수
現 해커스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교수
現 공단기 법원직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
現 변리사스쿨 민법, 민소법 담당

2. 저서

Slim 민사소송법 조문집 제6판(2020), 학연 刊
Fortune 민법의 종결 (2021), 학연 刊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 전정2판(2021), (주)월비스 刊
Fortune 김춘환 법무사 핵심 암기장(2023, 신간), 학연 刊
Fortune 민법 (2025), 학연 刊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12판(2026), ACL 刊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민사법연구소, cafe.daum.net/chunzivilprozess

□ 변리사 2차 민소법에서 판례의 중요성

2차 민사소송법에서 판례를 변형하거나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숙지는 필수적이다. 특히 변리사 민사소송법은 1문제 ~ 2문제 정도는 항상 최신의 판례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숙지, 암기는 필수적이다.

□ 변리사 2차 민소법과 객관식 민소법의 호환성

최근의 2차 민사소송법에서 출제하는 최신 판례와 객관식 민사소송법에서 출제하는 판례는 호환성이 강하다. 특히 다음의 2023년 기출문제는 판례를 ‘복붙’한 수준이다.

甲은 서울 중구 소재 지상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X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상가변영회)이다. 乙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2017. 9.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乙은 2019. 6. 30.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은 2021. 7. 30. 乙을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2021. 10. 8. 그 조정신청서 부분이 乙의 주소(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송달되었고, 이를 乙이 수령하였다. 乙은 2021. 11. 12.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乙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乙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2. 5. 10. 변론기일통지서, 2022. 6.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2. 6. 14. 위 변론기일통지서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각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2022. 6. 2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2. 7. 4.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7. 8. 甲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분을 2022. 7. 12.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2.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분을 송달하여 2022. 8. 9.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乙은 2023. 1. 9.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정분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2021. 9. 27. 乙을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乙은 2021. 10. 18. 소장에 기재된 乙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2021. 10. 19.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乙은 2021. 10. 20. A교도소에 구속수감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1. 11. 16.과 2021. 12. 14.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변론기일통지서 등

을 乙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乙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22. 1. 11.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 乙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22. 2. 10.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乙은 2022. 8. 19 A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22. 8. 22.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2. 9. 2.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이 사건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변리사 2023>

I. 설문 (1)에 대하여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결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 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분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대판 2015.08.13. 2015다213322, 제173조). 따라서 항소심법원이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논거 - 判例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민사조정법은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제39조)고 규정하고 있고,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인용하지 못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는 등 민사조정절차와 민사소송절차를 준별하고 있다. 한편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36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조정신청인이 다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조정신청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민사조정절차를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하고(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신청인이 조정담당판사가 정한 보정기간 내에 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하므로(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4),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반드시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조정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조정신청서 부분 등을 송달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신청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신청서 부분의 송달이 소장 부분의 송달을 갈음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변론기일통지서 송달절차가 진행되는 등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분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대판 2015. 8. 13. 2015다213322).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원고는 2012. 7. 31. 피고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012. 10. 9. 그 조정신청서 부분이 이 사건 주소로 송달되었고, 이를 피고가 수령하였다.
- ② 피고는 2012. 11. 13.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위 조정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 ③ 제1심법원은 2013. 5. 10. 변론기일통지서, 2013. 6.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6. 14. 위 변론기일통지서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각 발송송달을 실시하였고, 2013. 6. 2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 ④ 제1심법원은 2013. 7.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13. 7. 12.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3. 8. 9.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 ⑤ 피고는 2014. 1. 9.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위 조정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항소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II. 설문(2)에 대하여

1. 결론

비록 송달받을 사람이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록에 의하여 법원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수감자의 종전 주소에의 송달은 무효이며, 반드시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대판(전) 1982.12.28. 82다카349, 제182조). 따라서 乙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A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은 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사안에서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흠이 있으나,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대판(전) 1984.03.15. 84마20). 또한 불변기간의 부준수에 의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장애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하여야 한다(제173조 1항). 이 경우 장애사유가 종료한 때라 함은 천재지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에는 그 재난이 없어진 때이고, 판결의 송달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판결이 있을 것을 안 때이다. 그리고 공시송달의 경우에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02.24. 2004다8005).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2022. 8. 22.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2. 9. 2.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부터 2주일 내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하므로, 항소심법원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

2. 判例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

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2. 1. 13. 2019다220618).

□ 최신 판례에 대한 속지

현재 객관식 민사소송법 강의에서 1타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 최신 판례를 강의하고 있다고 자부하므로, 이에 대한 속지는 민사소송법 고득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